

제 호

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

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

직인

징계혐의자 조서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등록번호	
사무소명칭			
소재지			
징계요구자 의견			